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2515호

2026년 4월 10일 (금)

차 례

고시 · 공고

- 파주시 공고 제2026-1177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공시송달 공고.. 1

회									
람				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법」 제79조(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(대집행의 절차)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『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』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4. 10.

파 주 시 장

1. 공고내용 :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4. 10. ~ 2026. 4. 24.(14일간)
3. 공고장소 : 파주시 포함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, 파주시보
4. 관련법규 : 「건축법」 제79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
5. 공시송달 내역

대지위치	건축주 등	위반내용 및 규모	위반법규
파주읍 연풍리 310-20번지	박○우	- 주택(무허가), 123.05㎡, 시멘트블럭조	「건축법」 제11조
파주읍 연풍리 299-39번지	김○령	- 주택(무허가) 123.0㎡, 시멘트블럭조	「건축법」 제11조

6. 기타사항

-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「건축법」 제108조(벌칙)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(비용납부명령서) 및 제6조(비용징수)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 ☎ 031-940-4764 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